

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-704호

“호남권 중독분석실 구축·운영 사업” 공모

호남권역의 중독원인물질 분석, 24시간 검체 접수 및 분석체계 운영 등 중독분석실 운영을 위한 ‘호남권 중독분석실 구축·운영 사업’에 참여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9월 7일

보건복지부장관

1 사업개요

□ 배경

-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「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 사업」을 수행 중에 있으며('15~), 중독분석실 위탁·운영을 통해 급성중독환자의 원인물질 및 혈중농도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공하여 의료진의 치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음
- 지역적 접근성 및 권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요 지역*에 전국 6개소 중독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음
 - * 중독분석실 운영 지역: 서울, 강원, 전남광주, 대전, 대구, 부산
- 호남권역 중독분석실의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으로 차기 운영기관 선정 필요

□ 사업 내용

- (사업명) 호남권 중독분석실 구축·운영 사업
- (사업예산) 300백만원/년
- (주요내용) 중독원인물질 성분 및 혈중농도 분석, 24시간 검체 접수 및 분석체계 운영, 분석결과 회신, 품질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
- (선정기관) 중독분석실 1개소(전남광주, 전북 권역 소재)
- (사업기간*) '27.01.01. ~ '29.12.31.
 - * 국가 정책 방향의 전환, 정부 예산의 삭감 또는 지원 종료 등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이라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음

□ 사업 수행체계

- 보건복지부
 - 사업 총괄 및 정책 지원
 - 사업계획 승인
 -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승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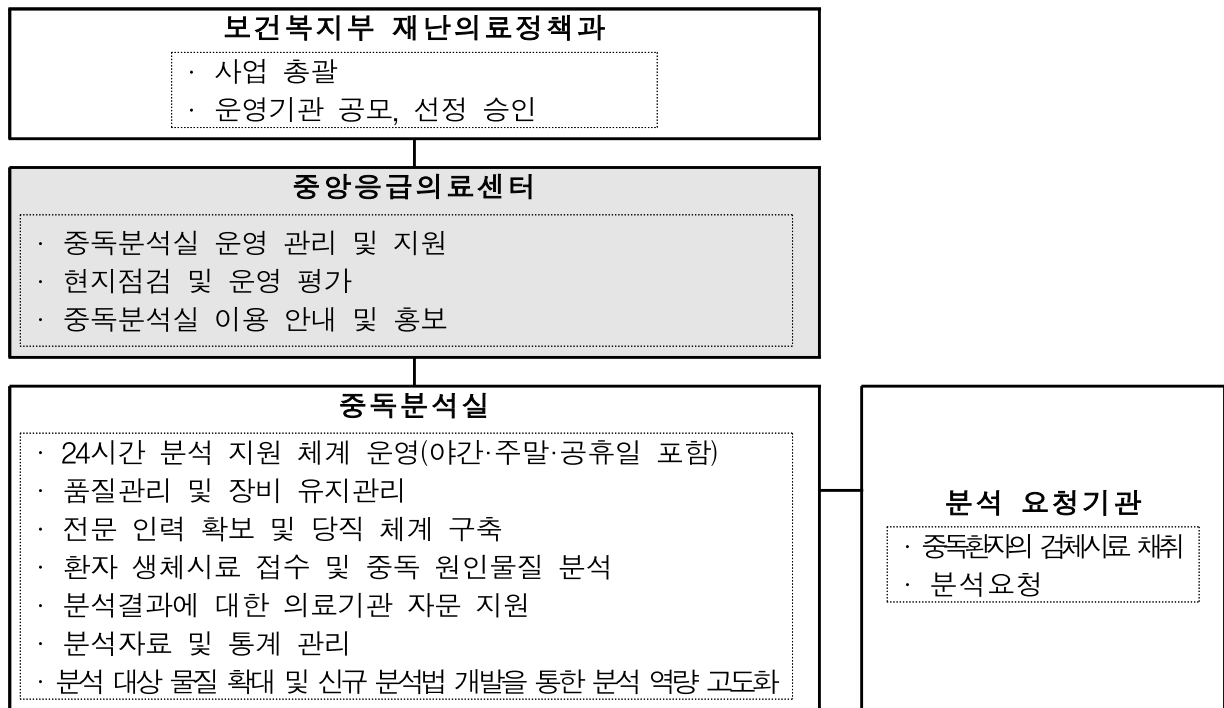
○ 중앙응급의료센터

- 중독분석실 운영 관리 및 지원
- 현지점검 및 운영 평가
- 중독분석실 이용 안내 및 홍보

○ 중독분석실 운영기관

- 중독분석실 운영
- 운영실적 및 사업비 운영·집행 관리
- 사업계획서 및 결과·정산 보고서 제출

<중독분석실 업무 추진 체계>



<중독분석 절차>



□ 설치기준

○ 시설기준

- (분석역량) 정성·정량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함
 - 기존 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설·장비를 활용 할 수 있음. 다만, 기존 업무와 병행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중독분석 업무의 신속한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
- (공간분리) 교차오염 방지 및 분석 신뢰성 확보를 위해 '시료 전처리 공간'과 '기기 분석 공간'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

○ 분석장비 기준

-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함
 - 기본 장비: 시료 전처리 장비, 원심분리기, 초저온 냉동고·냉장고, 국소 배기 및 안전설비 등
 - 정밀분석장비: 기체크로마토그래피-질량분석기(GS-MS), 액체크로마토그래피(LC-MS/MS) 등
- (장비 관리) 사업비로 구축된 장비는 전용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, 24시간 상시 가동을 위한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함
 - ※ 원내 공용장비 활용 시 긴급 분석 우선 배정 체계 마련 필수

○ 인력 및 조직 기준

- (인력확보) 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해 최소 기준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확보하여야 함
 - (참고) 최소인력기준

구분	인원	자격요건
분석전문가	1명 이상	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
분석요원 또는 보조인력	2명 이상	분석업무 수행 가능자

- (근무체계) 야간·주말·공휴일 대응이 가능한 교대 근무체계 및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
- (임상자문단 운영) 임상적 연계·해석을 위해 중독의학·응급의학·임상독성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체계를 구축하여야 함

□ 운영기준

○ 검체 운송 및 접수 관리

- (운송체계) 응급의료기관의 검체는 일반구급차 또는 전문배송업체를 통해 신속히 운송함
 - ※ 특수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을 우선하므로, 검체 운송은 일반구급차 활용을 원칙으로 함
- (품질유지) 운송 중 적정 온도(냉장·냉동), 밀봉 포장 상태, 소요시간을 실시간 모니터링·관리하여야 함(운송비는 사업비 범위 내 집행)
- (관리책임) 검체의 적정 보관온도, 포장상태 및 운송시간 등을 확인·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, 전문배송업체 활용 시 발생 가능한 분실·파손·지연 등의 관리 책임은 사업수행기관에 있음

○ 24시간 검체 접수 및 분석 지원체계

- (상시운영) 365일 24시간 검체 접수 및 즉각적인 분석 수행이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
- (우선대응) 응급환자 검체 접수 시 타 일반 업무에 우선하여 긴급 분석을 개시하여야 함

○ 분석결과 회신 및 기준시간

- (기준시간) 검체 접수 시점부터 다음 기준시간 내 회신을 원칙으로 함
 - 정성분석: 검체 접수 후 6시간 이내
 - 정량분석: 검체 접수 후 8시간 이내
- * 기준시간 내 결과 회신이 어려운 경우 지연사유 및 조치결과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보고하여야 함

- (결과통보) 분석 완료 즉시 '중독정보시스템'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등록·발송함

* 시스템을 통한 결과 제공이 즉시 어려운 경우, 유선·이메일 선통보 후 사후 전산 등록

○ 내부외부 품질관리(QA/QC)

- (정확도 검증) 자체 표준작업지침서(SOP)에 기반한 내부 정도관리를 정기 수행하여야 함

□ 행정사항 및 사업관리 기준

- (사업 총괄·승인) 주요 행정사항(사업계획 수립·변경, 성과물 활용 및 대외 발표 등)은 사전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함

○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

- (계획수립)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(예산, 인력운영, 장비운영 계획 등 포함)를 제출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
- (계획변경) 인력 구성, 주요 장비, 예산 항목의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

○ 실적 및 결과 보고

- (정기실적) 월별 분석요청·제공실적을 중독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등록·관리하여야 함
- (사업결과보고) 계약 종료 4주 전까지 최종 결과보고서(안)을 제출하고,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본을 차년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

○ 성과물 관리 및 권리 귀속

- (산출물 제출) 사업 수행 중 생성된 원천 데이터, 통계자료, 분석결과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하여야 함
- (대외공표) 분석자료 및 성과물을 학술지 게재, 학회 발표 등 대외에 공개할 경우 사전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협의·승인을 거쳐야 함

□ 신청자격

○ (기관 자격)

-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
-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, 학술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
-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5조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단체

○ (지역 요건) 호남권(전남광주, 전북) 내 소재한 기관

○ (수행역량 및 확약 요건)

- 사업 착수 전까지 본 사업에 필요한 정성·정량 분석 시설·장비 및 전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, 24시간 상시 분석 지원체계 구축·운영이 가능한 기관 (※ 미충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)

□ 공고 및 신청방법

○ (공고 방법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공고문 게시

○ (제출 서류) 각 1부 제출

- 중독분석실 신청서(붙임1)
- 중독분석실 운영 계획서(붙임2)
- 시범사업 참여 서약서(붙임4)
- 인력 운영 계획, 분석 역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○ (제출처 및 방법)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* 접수

* 등기우편: (04539)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16 5층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취약지·지역협력팀 중독치료지원사업 담당자 앞

○ (제출 기한) '26.09.30.(수) 18:00

* 문의: 사업담당자 ☎02-6362-3442, E-mail: erpoison@nmc.or.kr

□ 선정 및 지원 절차

○ 선정 절차

절차	주체	내용
위탁 운영기관 공고	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	'27년 호남권 중독분석실 운영기관 공고(보건복지부 홈페이지)
↓		
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	위탁 운영 희망기관	신청 안내에 따라 위탁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↓		
선정 평가	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(선정평가 위원)	선정위원회 사업계획서 평가 및 대면심사 실시 후 적합기관 선정
↓		
결과 통보	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	선정결과 공고(보건복지부 홈페이지) 및 선정 기관 개별 통보

○ 선정평가 위원 구성 및 평가 방법

- (평가 위원) 선정위원회 위원(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전문가 5인 이내)
- (평가 방법) 대면평가
- (평가 자료)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, 추가 설명 내용
- (평가 기준) 10개 항목, 100점 만점(사업타당성 20점, 추진계획적절성 80점)
- (선정 방법) 최종 평가점수(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)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선정

※ 평가점수는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.
단,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

< 중독분석실 선정 평가기준 >

구분		평가지표 및 평가기준(안)	배점
사업 타당성 (20)	사업 계획 (20)	1.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중독분석실 운영 목표 및 구체적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?	10
		2. 사업 관리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?	10

구분		평가지표 및 평가기준(안)	배점
추진 계획 적정성 (80)	조직 · 인력 (20)	3. 중독분석실을 운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채용 계획 등 인력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?	10
		4. 평일 야간·주말·공휴일 등에도 안정적인 분석 대응이 가능하도록 당직체계 및 대체 인력 확보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?	10
	시설 · 장비 (20)	5. 정성·정량 분석이 가능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거나, 구축 계획*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? * 시약·재료비, 장비 유지보수·수리비 및 장비 임차료 포함	10
		6. 시료 전처리, 분석 등 중독분석 업무 수행에 적합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?	10
	운영 방안 (30)	7. 24시간 연중무휴 검체 접수 및 분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, 기준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운영계획이 있는가? * 정상: 6시간, 정량 8시간 이내	10
		8. 검체 운송, 보관 등 검체 관리체계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·정확도 확보를 위한 내부 품질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?	10
		9. 중독환자 분석 대응실적 및 노하우가 있는가? * 해당 내용을 객과적인 수치 및 실적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	10
	예산 편성 (10)	10.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사용계획이 적정하게 산정·배분되어 있는가? * 기존 구비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, 장비 유지보수·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기관 내 별도 지원 계획이 있을 경우 지원방안을 함께 작성	10

※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선정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○ 확정 절차

- 선정 평가 결과 및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 확정
-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업무협약서를 통한 사업비 지원
-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보완 의견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*

* (제출방법) 등기우편** 또는 사업담당자*** 이메일로 제출

** 등기우편: (04539)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16 5층 중앙응급의료센터

*** 사업담당자 ☎02-6362-3442, E-mail: erpoison@nmc.or.kr

-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(수정)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

4

수행일정[안]

- (선정 공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게시, 서류 접수(~'26.9.30.)
- (선정 평가) 수행기관 적합성 평가(10월 중)
- (선정 및 착수 회의) 선정 결과 통보(11월 중)
- (사업계획서 검토) '27년 중독분석실 사업계획서 제출(~12월)

월별	8	9	10	11	12
내용					
중독분석실 운영기관 공모 계획 보고					
중독분석실 운영기관 선정 공고					
중독분석실 운영기관 적합성 평가					
중독분석실 운영기관 선정					
2027년 중독분석실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					

중독분석실 사업 신청서				
신청기관	기 관 명			
	유 형			
	☐ 종합병원 ☐ 상급종합병원 ☐ 교육기관 ☐ 학술·연구기관 ☐ 비영리법인 ☐ 기타 ()			
	소 재 지	* (우편번호 포함) 도로명 주소로 기재		
	전화번호(FAX)		대 표 자	
책임자	성 명		전화번호	
	직급/직위		e-mail	
본 기관은 「호남권 중독분석실」 운영 후보 기관으로 신청하며, 중독분석실 선정 시, 24시간 중독분석 지원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. 년 월 일 신청인(기관장) (인)				
보건복지부장관 귀하				

사업계획서

사 업 명					
사업수행 기 관 명					
사 업 책 임 자	성 명		직급/직위		
			전화		
	소 속 부 서		E-MAIL		
			FAX		
사 업 협력기관					
예 상 사 업 비	총 계	국고지원	기타 예산	총참여 인원수	명
	천원	천원	천원		
총 사업기간	. . . ~ . . . (개월)			총참여 인원수	명
위와 같이 「호남권 중독분석실 구축·운영 사업」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○○○장 서 명 (인)					
보건복지부 귀하					
<구비서류> 1. 사업계획서 제출문서 1부 2. 사업계획서 10부					
사업담당부서 담당자 이름 : 연락처(Tel. , Fax.) 사업수행기관 주소 :					

1 사업 목적

☐ 사업 목적 및 필요성

○

-

☐ 사업 목표

○

-

※ 정량화된 목표 제시 : 세부분야별 수치화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 제시

※ 그외 사업신청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 제시

2 사업 수행내용 및 추진 방법

※ 아래 방향성에 따라 관련 사업 혹은 활동 반드시 포함

☐ 중독분석실 운영계획

○

-

☐ 중독분석실 인력운영 계획

○

-

☐ 중독분석실 시설·장비 관리 계획

○

-

☐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

○

-

- ※ 참여기관 확정시에 작성, 논의 안건, 주요일정 등 포함

3 사업 수행인력

※ 작성 주의사항

- 수행인력은 직종 필수 기재(면허 및 자격증 사본 추후 별도 제출)
- 채용예정의 경우 '직종 구분'과 '신규/기존' 란만 작성
- '의사-전문의'인 경우: 비고란에 전문 과목 작성
- '신규/기존'란은 기존인력 활용 또는 신규 채용 여부 기재

☐ 수행인력

구분	직종	면허 및 자격 취득일	성명	업무 경력	신규/기존	비고
1		2022-03-02	김○○	2022-03-02	신규	
2		2000-03-02	이○○	2019-10-1~	기존	

4 사업 추진일정

☐ 사업 추진일정('27.1.1.~'27.12.31.기준)

※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세부분야별 업무추진일정을 표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

구 분 추진내용	월 별 추진 일정												비 고
	1	2	3	4	5	6	7	8	9	10	11	12	
추진진도 (%)													

5

일정별 세부추진 계획

6

사업비 구성

1) 사업비 구성

(단위: 원)

구분	주관기관	참여기관	참여기관2	합계
보조금	000,000,000 (00%)	000,000,000 (00%)	00,000,000 (00%)	00,000,000 (00%)
자부담	000,000,000 (00%)	000,000,000 (00%)	00,000,000 (00%)	00,000,000 (00%)
총계	000,000,000 (00%)	000,000,000 (00%)	00,000,000 (00%)	00,000,000 (00%)

2) 지출항목별 예산 집행계획(예시)

구 분	보조비목	보조세목	금액(원)	비율(%)	
				구 분	전 체
1. 자체 수행경비	인 건 비		000,000,000		
		보 수	000,000,000		
	운 영 비		00,000,000		
		일 반 수 용 비	0,000,000		
		공공요금 및 제세	0,000,000		
		재 료 비	0,000,000		
	여 비		00,000,000		
		국 내 여 비	0,000,000		
		국 외 여 비	0,000,000		
	업 무 추 진 비		0,000,000		
		사 업 추 진 비	0,000,000		
	자체 수행경비 총계			100	
2. 용역비 (위탁사업비)					
	용 역 비 총 계			100	
3. 자산취득비					
	자 산 취 득 비 총 계			100	
	전 체 총 액				100

3) 세부 산출내역

(단위: 원)

비목/세목	예산액	산출내역
사업명		
계	000,000,000	
(110) 인건비	000,000,000	
(110-01) 보수	000,000,000	○ 사업책임자 : 00,000,000원 - 0,000,000원 x 0인 x 00월 x %(참여율) = 00,000,000원 ○ 행정원 : 00,000,000원 - 0,000,000원 x 0인 x 00월 x %(참여율) = 00,000,000원
(210) 운영비	000,000,000	
(210-01) 일반수용비	000,000,000	
	0,000,000	○ 인쇄비 및 유인비 - 000자료 : 00,000원 x 00부 = 000,000원 - 000자료 : 00,000원 x 00부 = 000,000원
	000,000	○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- 회계정산위탁수수료 : 000,000원
	000,000	○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- 0000 : 0,000원 x 000개 = 000,000원
	00,000,000	○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- 000수수료 : 00,000원 x 0개 x 0개월 = 000,000원 - 000사용료 : 0,000원 x 00회 = 00,000원
(220) 여비	000,000,000	
(220-01) 국내여비	0,000,000	
	000,000	○ 시내출장 - 00,000원 x 0명 x 0회 = 000,000원
	000,000	○ 시외출장 - 00,000원 x 0명 x 0회 = 000,000원

요 약 문 (2장 이내)

사 업 명			
사업책임자		사업수행기관	
사 업 비	총 계		
	천원		
사 업 기 간	. . . - . . (총 개월)		
사 업 내 용 요 약			
◦ 사업의 필요성			
◦ 사업의 목적 - 목적 - 세부목표			
◦ 사업의 주요내용 및 방법 - 사업 주요내용 - 사업 수행 방법			
◦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-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- 사업의 활용·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			

서 약 서

○○○○은 「호남권 중독분석실 구축·운영 사업」의 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준 수 사 항

1. ○○○○은 보건복지부의 중독분석실 구축·운영 사업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2. 중독분석실 구축·운영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사업안내에 따라 집행·관리하고,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3. 지원받은 운영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.
4.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 -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 - 법령의 규정,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-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
 -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
 -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
 -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수행하지 못하여, 사업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미충족한 경우
 - 그 밖에 중독분석실 구축·운영 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
5. 그 밖에 중독분석실 구축·운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사항을 준수한다.

2026 . . .

○○○장

서 명 (인)

보건복지부 장관 귀하